

<별표 1>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별표 2> 인사규정 제10조 관련 경력환산표

적 용 대 상	적용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다만, 재직중 지정된 기간에 한 함) ·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기업 중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 · 군복무기간 · 서울시설공단 기간제 근무기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 (다만, 재직 중 지정된 기간에 한함) ·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법 제2조, 제5조에 정한 금융기관 ·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각종 학교 (유치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각종 학교 · 기타 공공단체 또는 전문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특별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임기제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 근무기간 ·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6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경력의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 이중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3. 경력 소요기간 환산은 월수를 단위로 하고 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며, 총 경력 환산년수 중 1년 미만 월수는 공단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 인정하며 입사 후 실제 근무년수를 더하여 1년이 되면 정기승급 시에 1호봉을 승급케 한다. 	